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8. 2. 4.

사회건설위원회

1. 審 查 經 過

- 가. 발의일자 : 2008년 1월 16일
- 나. 발 의 자 : 박정자 의원 외 10인
- 다. 회부일자 : 2008년 1월 25일
- 라. 상정일자 : 제13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8년 1월 28일)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설명자 : 박정자 의원)

가. 제 안 이 유

-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중에서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안정된 의료혜택과 건강한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등록 장애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 요 내 용

- 차상위계층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함(안 제3조)
- 급여대상자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장이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명단에 기록된 자 중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안 제4조)
- 급여대상자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구청장이 매년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함(안 제7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함
(안 제8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 이 남 식)

-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에 의거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속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구현하는데 조례제정의 의미를 두고 있으며,
-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 주민중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 안 제4조 대상자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장이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명단에 기록된자 중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심사결정하고,
- 안 제8조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 부칙에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조·제24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에게 최저의 의료혜택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112
----------	-----

발의년월일 : 2008년1월16 일

발 의 자 : 박정자 의원외 10인

1. 제정이유

-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중에서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안정된 의료혜택과 건강한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등록 장애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차상위계층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함(안제3조)
- 급여대상자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장이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명단에 기록된 자 중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안제4조)
- 급여대상자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제5조)
-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구청장이 매년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함(안제7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함(안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인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급여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제4조(급여대상자 선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선정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조사실시)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급여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건강상태, 재산상황,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제7조(지원예산)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매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등) ①구청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